



동작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 목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(상도대림아파트주택재건축사업)

우리 구 상도동 36-1 외 5필지 상도대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신청되어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아래와 같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하고자 합니다.

【 상도대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】

1. 사업위치 : 동작구 상도동 36-1 외 5필지
2. 시 행 자 : 상도대림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김광수
3. 관리처분계획 인가 주요내용
 - 가.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m ²)	동 수	층 수	세대수 (세대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건축면적 (m ²)	연면적 (m ²)	용 도
44,100.4	아파트 8개동 상가 1개동	지상29층 /지하4층	893	18.82	244.26	7,421.2361	141,378.1811	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

나.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공급대상 (m ²)	주택규모별(전용면적기준) 공급세대수								상가 면적 (m ²)
	계	59A	59B	59C	84A	84B	84C	108	
		59.8165	59.9005	59.5123	84.8725	84.9453	84.9150	108.9452	
계	893	181	17	55	403	135	46	56	1,792.2605
조합원	469	112	9	33	182	59	18	56	-
보류시설	13	7	-	-	6	-	-	-	-
일반분양	406	62	3	22	215	76	28	-	-
소형주택	5	-	5	-	-	-	-	-	-

다.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

구분	용도폐지			
	소 계	도로		
규모(m ²)	131.0	131.0		
구분	신 설			
	소 계	도로	어린이 공원	경관녹지
규모(m ²)	4,673.6	863.1	1,720.2	2,090.3

라.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상시기 등

- 기간 :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

- 붙임 : 1. 관리처분계획인가 검토보고서 1부.
 2. 관리처분계획인가서 1부.
 3. 고시문(안) 1부. 끝.

주무관 **김동석** 주택사업팀장 **김성근** 주택과장 **이정현** 도시관리국장 전결 08/19
최인수

협조자 주무관 **김경문**

시행 주택과-109707 () 접수 ()

우 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(노량진동) / www.dongjak.go.kr
 전화 02-820-9776 /전송 820-9986 / 201501102@dongjak.go.kr / 부분공개(6)